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제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나. 개정사유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회계 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안 제3조 제1항)
 -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173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의 제목 "회계 공무원임용"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회계출납 명령관은 화순군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공무원은 화순군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로 개정 (안 제3조제1항)
-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며 동조중 "사업"을 "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의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공무원은 화순군의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수납액"을 "수입액"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을 "기금운영관은"으로 하고 동조동항 및 동조 제2항중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 (이하 "회계"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의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 공무원은 화순군의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 운용</p> <p>.....</p> <p>제1조 (목적) . . .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p> <p>.....</p> <p>..... 기금</p> <p>.....</p> <p>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p> <p>.....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계장.</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p> <p>..... 기금운용관</p> <p>.....</p> <p>기금출납원</p> <p>.....</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수입) ① 회계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 수납액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p>
<p>제6조(지출) ① 회계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회계출납공무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휘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원 ③ 기금출납원</p>